

수신 한국문화정책개발원장

제목 “‘99년도 규제정비계획(문화부문) 관련 조사연구”에 관한 건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 연구-81(1999.5.13.)
3. 위 관련에 따라 귀 원에서 수행하는 “‘99년도 규제정비계획(문화부문) 관련 조사연구”와 관련한 우리 협회의 의견을 별첨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99년도 규제정비계획(문화부문) 관련 한국도서관협회 의견서” 1부. 끝.

‘99년도 규제정비계획(문화부문) 관련 한국도서관협회 의견서

I. 사서자격증 교부 (법 6조)

1. 검토의견

- 사서자격증 교부사무는 절대적으로 존치되어야 함.
- 오히려 21세기를 앞두고 사서자격제도는 우리 사회의 지식과 정보화 수준 향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을 매우 중요한 제도임. 전문인력 양성을 담당하고 있는 문헌정보학(도서관학) 및 관련 학문의 정신적 가치를 표상하고 있으며, 외국에서도 이미 고도의 전문직종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는 이의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자격의 세분화, 확대(예: 분야별 전문사서자격 부여, 정보검색관련 전문자격 등)되어야 할 것임.
- 지식과 정보를 다루는 일이 국가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을 경우, 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사서)에 대한 적절한 검증과 체계적인 관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 비전문가 또는 무자격자들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큼. 따라서 사서자격제도를 통하여 국가 행정과 국민들의 일상생활의 수준을 향상하고 건실하게 유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도서관계에서는 현재 사서자격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바, 현 시점에서의 사서자격증 교부사무의 폐지가 아니라 발전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때임. (예: 사서자격의 국가고시제도 도입 등). 또한 사회적으로 지식과 정보능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인 사서의 배치와 활용에 보다 노력하여야 할 것임.

2. 사서자격증 교부가 행정규제라는 주장의 문제점과 반론 (현실적 문제점)

-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사서자격증 교부자의 수에 비하여 실제 이를 활용하고 있는 사서의 수가 적다는 이유와 졸업증명서와 학위증으로도 사서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논지로 자격증 제도 폐지를 거론하고 있으나, 이는 위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지식정보화시대를 앞두고 미래지향적 인식과 사고의 부족과 사서자격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가 부족한 때문임.

-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은 전혀 합리성이 없음. 즉, 자격증을 교부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도서관에서 근무할 수는 없는 문제임. 많은 사서들이 자격증을 기반으로 도서관 등에서 다방면의 일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음. 또한 전문능력의 향상을 반영하여 사서자격을 준사서, 2급정사서, 1급정사서로 구분하여 두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이해도 충분히 하지 않은 지적임. 자격증은 그 전문가로서 일할 수 있는 필요한 교육과 훈련, 경험을 갖추고 있다는 증명이지 반드시 취업을 위한 증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격증 교부건수에 비해 실제 도서관 등에서 일하는 사서의 비율이 낮다고 해서 이를 폐지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임. 절대적으로 낙후된 우리 나라 도서관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사서자격증 소지자가 도서관 등에 배치되지 못한 것은 국가나 사회의 도서관 등에 대한 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때문임. 따라서 사서자격증 교부를 행정규제라고 하기 이전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우선적으로 도서관 등 국민들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서비스기관을 적극 설립·운영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일 것임.
- 졸업증명서 등으로 사서자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경우, 사서를 필요로 하는 기관마다 일일이 졸업증명서, 학위증, 각종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받고 이를 확인해야 하는 등 오히려 막대한 시간과 경비의 낭비를 가져오게 됨. 따라서 사서자격증 교부를 폐지할 경우 이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낭비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오히려 새로운 규제가 될 것임.
- 1965년 시행이후 현재까지 4만여 건의 사서자격증 교부된 바, 이를 폐지할 경우에는 이들의 기득권을 상실케 함으로써 새로운 민원을 야기할 수 있음. 또한 1953년 이후 우리 나라 지식과 정보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사서인력 양성을 열정적으로 수행해 온 40개 대학, 전문대학의 많은 교수진과 학생들의 사기와 의욕을 상실케함으로써 관련 학문 발전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주요한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무너뜨릴 것임.

3. 사서자격증 교부가 행정규제가 아니라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 핵심 전문인력 양성과 확보라는 차원에서 더욱 강화되어야 할 일임.

- '행정규제란 국민들의 생활에 불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행정적 편의와 이익만을 고려하여 이를 강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사서자격증 교부사무가 과연 국민들의 생활에 불필요한 행정이며 실제로 어떤 불편을 초래하였는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임.
- 21세기는 정보화사회, 지식기반사회로 지식과 자료, 정보의 폭발적 증가와 유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의 적절한 활용이 국가와 국민 개개인의 현실적 삶의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인이 될 것임. 따라서 국가나 국민 개개인에게 이러한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
- 도서관은 이러한 지식과 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설립되어 운영되어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 이미 선진국들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정보인프라(NII, GII)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지식과 정보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서임.

- 이렇게 중요한 지식과 정보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인력(사서)의 양성과 활용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음. 따라서 앞으로 중대한 사회적 과제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기초교육과 지속적인 재교육을 통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해 내야 할 것임.
- 이러한 전문인력 양성의 과정에서 사서자격증 교부 사무가 발생하였음. 즉, 일정한 전문교육과정을 마친 사서에게 자격증을 부여하고, 계속적인 재교육, 훈련을 통하여 전문능력 향상을 유도하고 있음.
-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좋은 지식과 정보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겸증된 자격을 가진 전문인력 확보는 매우 중요함. 따라서 사서자격증 교부 사무는 더욱 강화되고 전문화되어야 할 것임.

4. 사서의 전문성

- 사서는 한 사회의 지식과 문화를 선별, 수집, 정리, 보존하는 일을 담당하는 전문가로서 다양한 형태의 매체와 이를 처리, 가공하는 일 등에 있어 고도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필요로 하고 있음.
- 사서는 도서관 등에서 지식과 정보, 자료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들에게 공익을 앞세우고 엄격한 윤리를 지키며 최선의 봉사를 제공하는 일을 하는 전문가임.
- 사서는 도서관이라고 하는 인류의 풍부한 지식의 보고(寶庫)를 맡아 국민들의 알권리, 정보이용의 권리 등을 지키는 최일선에 서 있는 전문가임.
- 사서는 도서관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영지식, 각종의 전문기술에 관련한 지식과 경험, 대사회적 봉사에 필요한 인문·사회학적 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전문가임.
- 이러한 전문가로서의 사서 양성을 위하여 1953년 이후 전국 32개 대학과 8개 전문대학에 문현정보학(도서관학)과가 설치되어 전문교육을 하고 있으며, 대학 이외에 따로 "지정교육기관"에서 법에 정해진 바대로 "사서자격교육과정의 교과" 내용에 따라 전문교육과 훈련을 하고 있음.
- 또한 일정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기 위하여 "도서관인윤리선언"(1997년)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등 사회적 선을 위하여 이타주의에 따른 전문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5. 사서자격증 교부의 필요성

-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지식과 자료, 정보의 수집, 정리, 관리, 보존을 통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일을 담당하는 전문가인 사서가 이에 필요한 전문교육과 각종의 훈련과 경험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임.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전문교육과 훈련, 경험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사서자격증 교부는 합리적인 행정사무라고 할 것임.

- 자격증 교부를 하지 않을 경우, 우리 사회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식과 자료, 정보를 통제하고 관리함으로써 국가와 국민 개개인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할 때 필수적인 전문인력인 사서를 확보하기 어렵게 될 것임. 또한 사서자격증 교부사무를 폐지할 경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국가와 개인의 삶에 중요한 지식과 자료, 정보의 확보와 활용 시스템을 문란케 할 경우 그 피해가 를 수밖에 없음. 그럴 경우 지식과 정보가 국력인 21세기 지식기반사회, 정보화사회에서 국제적으로 경쟁에서 뒤질 것이 명백 함.
- 따라서 사서자격증 교부의 문제는 과거나 현재적 관점이 아니라 미래적 관점에서 인식하여야 할 문제로, 우리나라의 정보력을 강화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 가운데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진 사서의 체계적인 양성을 뒷받침할 자격증 교부는 더욱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음.

Ⅱ. 자료제출 의무 위반자 과태료 부과 (법 17조)

1. 검토의견

- 이 사무는 존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이 조항과 관련한 일을 국립중앙도서관이 담당하고 있는 바, 이 건과 관련하여서는 국립중앙도서관 측과 협의해야 할 것임.)
- 자료의 간행 또는 제작한 특정한 자에게 그 자료의 제출을 강제함으로써 국가와 국민 모두의 정보복지, 문화복지 수준 향상을 꾀하기 위한 필수불가결 수단이라고 생각됨.
- 현실적으로 본 규제조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는 거의 없음. 그렇기 때문에 일부 불필요한 규제라는 비판도 있으나 우리나라 출판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국내 지적자원의 망라적 확보와 이를 통한 전 국민의 지적활동 지원이라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목표 달성을 이로울 것이며, 본 규제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보존 또는 배포를 목적으로 자료를 간행 또는 제작하는 일부 국민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전제한 규제임으로 전국민의 정보복지 확보라는 측면에서 큰 문제는 아니라는 점에서 아직은 이러한 과태료 부과조치가 법률상 존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 만일 이러한 규제를 폐지하고자 한다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지식과 정보능력 향상이라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천 가능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2. 자료제출 의무 위반자 과태료 부과의 목적과 필요성

- 국내외 자료의 수집, 정리, 분석, 축적 및 공중예의 이용을 통하여 국가의 지적자산을 보존하고, 이의 활용으로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과 지식활용을 돋기 위하여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하여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제작한 자료 뿐 아니라 그 외의 자가 발행 또는 제작한 자료도 망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발행 또는 제작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강제성을 가지도록 한 것임.